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자료제공: 법무담당관실 ☎ 061-286-2624)

전라남도에서는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어떻게 이용하나요?

- | | |
|--------------------------------|--|
| 대 상 | 전남도민 누구나 |
|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전반 |
| 신청방법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https://law.jeonnam.go.kr)에 신청 |
| 상담방법 | 신청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관* 이 서면,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
| * 전남 도내 지역별(서부, 중부, 동부) 위촉 변호사 | |
| 문의전화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24) |

다른 기관 서비스는?

- | | |
|------------------------|--|
| 마을변호사
(법무부, 행안부) |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문의
- 전남 155명 위촉(목포시 제외) |
|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 전화 및 방문상담
공단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국번없이 132 |
| 법률홍닥터
(법무부) | 출장 방문상담
연락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무안) 061-285-1161 |
| 광주지방
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변호사 상담실
062-222-0420 |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은 고민도 크게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법(法) 어렵죠?
전라남도가 쉽게, 공짜로
도와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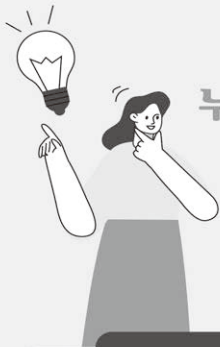


여러분을 위해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관 위촉

- 인 원 | 변호사 9명
- 위촉기간 | 2020. 8. 1. ~ 2022. 7. 31.(2년간)
- 상담분야 | 행정, 민사, 가사, 형사 등 법률상담



도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연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 061-286-2643
-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law.jeonnam.go.kr

다른 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연 락 처

마 을 변 호 사 |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국번없이 132
 법률홈닥터(전남사회복지협의회) | 061-285-1161
 광주지방변호사회(무료법률상담) | 062-222-0420



어려운 법, 이제 걱정말고
전라남도 무료 법률 상담관을 찾아주세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를 찾습니다

2021년 7월,
지방보조금
법령 시행!



잘 알고
사용해야겠다!

부정 수급 하면
반환·제재금 내고
벌칙까지 받는거야

지방보조금 어떻게 달라졌나요?

- 중요재산 부기등기
- 감사인 검증 및 회계감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제재부가금

다섯 배!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
(지방보조금법 제35조)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없이 처분
-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 사용
- 해당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내용 변경 등

신고절차 문의 (국번없이) ☎110

신고관련 안내 (국번없이) ☎1398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단체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검색

('21.12월 말 오픈예정)~!

78-6460000-000457-06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전략도천년

내 초이 전남
바뀌는 행운시대

2022년 3월(제353호)

법무상식



전라남도
JeollaNamdo

Contents

I

새로운 판례

1. 임대주택법위반	7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9
3. 임금	11
4. 손해배상	12
5. 차별구제	14

II

법령해석사례(법제처)

1.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0
2.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2
3.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25
4.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	28
5.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0
6.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33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36
2.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동조치명령 취소청구	42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명의만 빌려준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을 때	51
2. 분실한 내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때	52
3. 중학생인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였을 때	53
4. OTT 서비스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되어 요금이 결제되었을 때	54
5.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55
6. 의약품의 리콜 사유와 리콜 제품의 처리 방법	56
7. 자동차의 리콜 사유와 리콜 대상 확인 방법	57
8.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58

V

법무단신

1.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 불법도급 영업 판단은 59
2.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 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61
3.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64
4.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66
5.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68
6.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70
7. 지인 집 침입해 수억원 절도’ 공모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행 72
8.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 됐다면 74

VI

최근 제정·개정 시행법령

- 초·중등교육법 77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80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 다문화 가족 ③ 84
- Multicultural families ③ 87
- 多元文化家庭 ③ 90
- Gia đình đa văn hóa ③ 93

VIII

법제처 법나들이

- 옥상은 누구의 것? 96

새로운 판례

1

임대주택법위반

* 대법원 2021도10407

◇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만 한다)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제2조 제2 내지 2의3호),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받으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제21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위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

☞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 의무기간

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아파트를 매입하였지만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한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여 보증가입의무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 대법원 2019두55835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상의 명의이용행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택시업계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영 행태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단순히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운수종사자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안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만일 택시운수종사자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면 과로 상태에서 안전운전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운송수입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과속·난폭운전, 단거리 탑승거부, 합승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 택시운송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해석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의사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1)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다가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등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이란 ‘택시운송사업자와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그에게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택시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

행하였는지 등과 같은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에서의 차량 배차 등을 통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 시간·강도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의 과속·난폭운전 등 안전운행수칙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징계조치 등을 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가 제때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가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면서 제24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운수종사자 명단·현황을 제때 통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2. 개별기준 나.목의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택시발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살펴 그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를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운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이하 ‘이 사건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하였다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처분사유가 모두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

* 대법원 2021다218083

◇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1999. 12. 1.부터 1개월간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2000. 1. 1.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음.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1999. 12. 31.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5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되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원고는 2018. 3. 31. 퇴직하면서 2000. 1. 1. 입사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자, ‘입사일이 1999. 12. 1.이므로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 ☞ 원심은 원고의 수습기간 근무와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제반 사정상 원고의 수습사원 근무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시용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입사일은 1999. 12. 1.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4

손해배상

* 대법원 2021다275741

- ◇ 1. 선행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소취하로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 소의 취하와 달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먼저 제기된 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 원고(도급인)는 피고(수급인)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공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항변을 하였다가, 선행소송 항소심 계속 중 위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위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고, 선행소송은 피고 승소로 확정되었음
- ☞ 대법원은, 이미 선행소송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을 하였더라도 그 자동채권과 같은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고, 원고가 선행소송 제1심에서 상계 항변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은 다음 그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소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함

5

차별구제

* 대법원 2019다217421

-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도 소 적법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하는지(적극), 2.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적극), 3. 피고 甲, 乙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4. 법원이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5.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해석상 교통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소극), 6. 피고 甲, 乙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도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보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는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는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가.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4.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제8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별표는 교통약자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좌석형)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로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목적지 표지, 휠체어 탑승설비, 교통약자용 좌석 및 장애인접근가능표시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법령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교통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별표에서 열거한 바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별표는 승하차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고속 주행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에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입법상 논의의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피고 버스회사들과 같이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편의 제4조 제1항은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차별금지’ 편의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라는 제목으로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는 조항에서부터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항)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 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의무의 내용 등을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영역에서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영역에서 장애인차별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제4조 제1항과 제19조의 각 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 버스회사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역시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임
- ☞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적극적 조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음. 즉 원심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버스회사들에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위자료 청구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차별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저상버스 관련 청구,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관련 청구는 피고들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음. 이에 피고 버스회사들과 원고들이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부대상고)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버스회사들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고, 적극적 조치의 청구취지도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석상 피고 버스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편의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데 차별로 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자산·자본·부채, 현금 보유액이나 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하여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은 적극적 조치 판결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아울러 대법원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은 승하차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저상버스의 도입에 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업자에게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등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동편의시설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제19조 제5항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할 의무도 다하지 않아 피고 버스회사들의 차별행위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도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영역에서 장애인차별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과 제19조의 각 항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 등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였음

II

법령해석 사례(법제처)

사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등 관련)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문)고 규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이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 함)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은 퇴직급여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로서, 중간정산일 이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며, 같은 조 단서에 따른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이유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하는 근로자의 실업보험 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각주: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결정례 참조)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각주: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근로기준법」 제정이유서 참조)인바, 퇴직금은 사용자가 상당기간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은 예외적으로 퇴직 전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례 참조).

또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본문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20헌바40 결정례 참조)인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 당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금품, 즉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례 및 법제처 2021. 4. 28. 회신 21-0020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는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사례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련)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는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0호 참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각주: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토지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각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함)을 갖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각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한정함)이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은 국가시책에 따라 대상을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주택공급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공급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 중에서 특히 “제5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만으로 한정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0. 5. 10. 회신, 10-0097해석례 참조).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제19조제10항을 신설(각주: 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으로 신설된 후 2015. 12. 29. 국토교통부령 제268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제44조로 이동하여 규정됨)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당시의 「도시개발법」에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각주: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참조)하였으나 그 경우를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 신설 당시부터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를 포

함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각주: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하여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각주: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됨)의 반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거되는 주택에 상응하는 주택을 예외적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각주: 국토해양부령 제8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3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 등 관련)



질의요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나목1)]하고 있는바,

식품제조업자(각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1호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각주: 식품과 사료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로서, 생산하는 식품과 사료가 완전히 동일하나 포장만을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를 전제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에 따라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야 되는지?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먼저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의 제

조업자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고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사료로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은 식품제조 과정에서의 오염방지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분리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은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의 일부를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려는 것으로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재료나 공정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식품제조·가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의 경우에 같은 목 1)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례를 규정한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 제품을 생산했다면 위생·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포장만 달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별도의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1)을 적용하여 반드시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식품을 사료로 판매·공급하려는 경우 따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취지(각주: 2008. 3. 21. 법률 제893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3. 22. 시행된 「사료관리법」 개정이유서 참조)의 규정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일부를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시설과 분리되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4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의 산정 기준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의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관련)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각주: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면적”은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개별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는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의의 대상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달리,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 규정하여 “전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을 산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 동의요건을 달리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동의율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이 중 단독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토지면적 대비 토지소유자의 수가 적은 특성 등으로 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가 공동주택의 경우와 다를 수 있어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동의 요건을 별개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주택 외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은 개개의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 후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동의요건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개별 토지의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둔 것이므로 개별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수는 1필지를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가목)을,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라목)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외의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유자에 대해 별도의 동의율을 산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체 토지면적”은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 외의 각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모두 합한 토지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사례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질의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4조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이하 “국유재산 관리청”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각주: 기업규제완화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폐도·폐하천·폐도랑·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이라 함) 국유재산종합계획(각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매각 제한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게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각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립한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



계획에는 국유재산 처분기준(각주: 2022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를 국유재산의 매각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에서 “중소기업자가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처분 제한 사유임에도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전단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국유재산 처분기준)에 기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단순히 주지시키기 위해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계획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제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그 법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기업규제완화법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0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구 「국유재산법」(각주: 1986. 12. 31. 법률 제3881호로 일부개정되어 198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가, 국유재산법령에서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 등의 명세서 승인 위주의 “국유재산관리계획제도”를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국유재산의 연간 취득·운용·처분에 관한 총괄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제도”로 대체함(각주: 2011. 3. 30. 법률 제10485호로 일부개정된 「국유재산법」 개정이유 참조)에 따라, 해당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로 개정(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88호로 일부개정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이유 참조)된 것인바,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는 같은 법 제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회계연도의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내용이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에 적합하면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특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법률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의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요건

을 갖추면 그 처분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7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사례6

강화된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질의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대통령령 제301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그 조합원으로 추가로 가입하려는 자에게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지?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됩니다.



이 유

구 「주택법 시행령」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을 신설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사안은 “이 영 시행 이후”가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부분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기만 하면 그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영 시행 이후”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은 단순히 주택조합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조합의 설립 시기와는 상관없이 같은 영 시행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입법취지, 부칙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추가모집 승인을 받거나 일정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자에게도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는 조합의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였다면, 적용례의 문언을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해도 무방했을 것이고 굳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이라는 문언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면서 해당 부분에 괄호를 두어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의 시행일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고 이미 주택조합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부칙의 문언은 “조합의 설립인가”가 아닌 “조합원 지위 취득”을 중점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둔 것은 같은 영의 시행일 전에 이미 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거나 주택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그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종전에 조합원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려는 주택조합이 구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 가입 요건에 차별을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게 되어 투기 방지를 위한 같은 목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이 적용됩니다.

III

행정심판 재결사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29.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이며, 청구의 운전자 허○○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전남**바****,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위·수탁차주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 결과, 이 사건 차량이 2020. 4. 12.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이내 3회 주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0. 5. 7.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74,340원)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5. 11. 피청구인에게 “유류구매카드로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요소수 여유분을 구입·결제하여 단시간 반복 주유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 위반을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유가보조금(8,840원¹⁾) 환수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0. 6. 29. ~ 2020. 12.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20. 6.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1) 3건(74,340원) 중 1건(65,504원)은 경유구매(정상 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의 환수대상에서 제외됨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29.²⁾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2020. 6. 29. ~ 2020. 12. 28.)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운전자 허○○는 운행을 하다가 주유를 하려고 익숙하지 않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요소수를 넣었는데, 요소수 가격이 저렴해서 2개를 더 사게 되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문자가 오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지만, 운전자 허○○는 연세가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 2) 본사에서는 수시로 문자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위반사례가 없었다. 허○○에게도 유류구매카드는 유류 외에 사용할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시켰으며, 요소수 3개 가격 때문에 유류구매카드를 6개월간 정지한다는 것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생활하는 노령인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무거운 처분이다.
- 3) 더구나 코로나 19로 더더욱 빠듯하게 생활하는 이 시점에 유류구매카드 6개월 정지처분을 받는다면, 허○○의 입장에서는 차를 정리하고 폐업까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으니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 1)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인 허○○가 고령으로 유류구매카드 문자 알림 등을 확인하지 못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정수급액에 비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 제35조(화물차주의 준수사항) 제4호에서는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차량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을 위하여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카드에 일반결제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또는 기타 차량용품 등을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해

2)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2020. 5. 7.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2020. 5. 29.로 보정

서는 안 된다.

- 2) 또한, 청구인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이 빠듯한 지입차주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처분의 감면 여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자 교육 책자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 사건 규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하였다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행정상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3)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행위인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44조의2
-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5
-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29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전라남도 **시 **로 121 **빌딩 5층 소재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 허○○는 청구인 소유의 전남 **바*****(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위·수탁차주이다.
- 2) 허○○는 2020. 4. 12. 11:16경 경기도 ***시 소재 ***주유소에서 요소수(3개)를 구입하고 유류구매카드로 27,000원(유가보조금 8,841원)을 결제하였으며, 약 3분 후 경유 190ℓ를 주유하고 200,000원을 결제하였다(유가보조금: 65,504원).
- 3) 피청구인은 2020. 5. 7.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이 조회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니 의견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처분사전통지서 개요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차량번호	전남**바****
	차주 및 지입사	(유)****스틱, 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 단시간 반복 주유(의심거래일 : 2020. 4. 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유가보조금(74,340원) 환수 및 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또는 1년)	

4) 피청구인은 2020. 5. 2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행정처분 개요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차량번호	전남**바****
	차주 및 지입사	허**[(유)****스틱]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 구매(요소수 구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위반) ○ 거래일자 : 2020. 1. 12.(25.59 l)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8,840원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020. 6. 29. ~ 2020. 12. 28.(6개월)	
법적 근거	○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제9조의16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 제29조	

5)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환수금(8,840원)을 완납한 후, 2020. 6.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11.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2020. 5. 7.”로 기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2020. 5. 29.”로 직권 보정하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판례

가)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8호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는 “운송사업자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시 같은 규정 제29조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조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법과 규정에서 정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살피건대, ①이 사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8,840원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단순한 실수로 인정되며 성실히 납부한 점, ②청구인과 지



입차주 모두 이 사건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무거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동조치명령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동조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폐패각(꼬막껍질)을 무단 투기 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국민연대 전남본부)을 접수하여 사업장을 2회(2019. 12. 20., 12. 24.) 점검하여 사업장 내에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폐패각과 폐대나무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배출 및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폐대나무 등) 미이행과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패각 약 3,000m³를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①폐대나무건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후 처리기한 내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나, ②보관기간을 초과한 폐패각(약 3,000m³)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으며, 처리기간은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제출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0. 12. 30.까지로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패각을 2020. 12. 30.까지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실적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서에 따라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2020. 4. 28. 청구인 부지 옆 **읍 **리 ***-** 외 1필지 소유자로부터 폐패각이 본인 농지에 보관되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20. 5. 6.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명령 대상 폐기물(폐패각)이 청구인 사업장 부지로부터 인접한 **읍 **리 ***-** 외 1필지까지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부지 외 농지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2020. 6. 15.까지 우선적으로 청구인 사업장 부지 내로 이동하도록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0. 5. 8.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동조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꼬막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어민과 어촌계가 선별한 꼬막을 매수해오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 분리된 죽은 꼬막은 어민과 어촌계가 처리해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꼬막껍데기는 주변 농가에 비료로 무상 반출하고 있어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2) 꼬막껍질의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리명령은 위법하다 할 수 있다.
- 3) 껍질 발생 원인이나 처리 책임자 구분 없이 단지 청구인 부지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죽은 꼬막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등의 대상인 꼬막껍질 약 3천톤 중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 책임이 없는 죽은 꼬막의 껍질은 제외되어야 한다.
- 4) 폐패각이 보관된 **읍 **리 ***-**과 ***-** 토지는 2020. 4. 23. 민원인이 임의 경매로 취득한 것이고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니어링(가등기권자)의 요청으로 폐패각이 매립되었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
- 5) 따라서 선행처분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협을 강요하고, 청구인의 처리 의무가 불분명한 이웃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이동명령까지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 1) 폐패각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꼬막가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5. 4. 15.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폐패각 파쇄분쇄시설6-9(4,000kg/시간) 1기]를 하고, 2019. 1. 15. 폐패각을 연간 1,000톤(평균 2,730kg/일)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다.
 2019. 12. 24. 사업장 점검 당시, 청구인은 사업장과 인근 선별장에서 발생한 폐패각을 폐기물처분시설로 파쇄한 후 사업장 부지인 **읍 **리 *** (현재 다목적 체험시설 및 가공공장 신축 장소)에 약 3,000m³ 가량을 보관해 오다가, 2019. 7. 29. 다목적 체험시설 및 가공공장 착공 당시 현재의 보관장소인 **리 ***-*(잡종지)로 이동하여 보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업장 부지 인접 농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2020. 5. 6. 현장을 재점검한 결과, 폐기물이 **리 ***-*(잡종지)와 인접한 **리 ***-** 외 1필지(농지)까지 부

적정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2019. 7. 29. 이전에 사업장 내 보관되었던 폐폐각을 이동하여 해당 부지에 부적정 보관된 것으로 사업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 및 평탄작업까지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폐각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겠다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에도, 2019. 12. 24. 점점 당일까지 위탁처리를 한 내역(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이 없으므로 이는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 내 보관하여왔음을 반증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폐각을 인근 농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꼬막껍질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4에서 폐폐각(꼬막껍질)은 사업장폐기물(분류번호: 51-17-04)로 분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제1호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9. 1. 15. 폐폐각이 연간 1,000톤(평균 2,730 kg/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폐폐각을 폐기물로서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선별장에서 발생한 죽은 꼬막껍질의 처리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 부지 인근(**선착장)에 있는 꼬막선별기의 설치 운영자는 **어촌계(대표 서**)로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와 동일하고 **에서 생산되는 새꼬막 대부분이 해당 선별기를 통해 선별되고 있다. 선별 시에는 어민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있으며, 선별 후 발생된 폐폐각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직접 부적정 보관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령, 보관 중인 폐폐각이 모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폐폐각을 청구인이 혼합하여 평탄작업을 해놓은 상태로 청구인 사업장 폐기물과 꼬막선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죽은 꼬막)을 구분할 수 없는 점, 꼬막선별장 관리를 청구인 사업장 직원이 하고 있는 점, 선별장에서 발생한 폐폐각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운반하여 보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국민의 책무)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2019. 7. 29. 해당 부지(**리 ***-**-**외 1필지)로 이동하기 전 폐기물이 청구인의 사업장 부지 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토지소유자의 청결 의무 즉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주장(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하여

이 사건은 청구인의 폐기물로 인해 농지소유자가 농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원으로 인해 폐기물을 민원인 농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부지로 우선 이동한 후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안내한 사항으로, 당초 폐기물 처리명령 기간(2020. 12. 30.까지)은 변동이 없으므로 형평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2020. 2. 11. 이미 해당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선행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처분명령서(2020. 12. 30.까지 처리)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공문에 적시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식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이동조치명령은 선 행정처분 기한인 2020. 12. 30.까지 조치하도록 한 내용 중 타인의 토지에 있는 폐폐각만 사업장 부지 내로 우선 이동하라는 기한(2020. 6. 15.)을 명시하였을 뿐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된 폐기물 처리명령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처분(형사처벌의 위험)을 명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장비를 이용하여 이동 및 평탄작업까지 함으로써 현재 청구인의 폐기물과 선별장의 폐기물이 구분되지 않은 채 농지까지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폐폐각)에 대해서 사업장 내로 우선적으로 이동조치하라는 알림 형식이므로 이동명령 강요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5) 해당 부지(**리 ***-**-**외 1필지)의 폐기물은 전 토지소유자인 ****니어링이 요청하여 매립한 폐기물로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9. 12. 24.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장 관련자(기획이사)가 **읍 **리 ***-*(잡종지) 부지를 ****니어링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폐폐각을 보관해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반확인서에도 2019. 7. 29. 체험장 신축 착공 시 사업장 내 폐폐각 약 3,000m³를 해당부지로 이동하였다는 사업장 관련자(기획이사)의 확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만약 ****니어링의 요청으로 폐폐각을 해당 부지에 야적하였다 하더라도 「폐기

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에 이동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할 것이다.

- 6)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은 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폐기물을 야적할 수 없는 타인의 농지에 야적하여 농업을 방해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빨리 농지에 야적된 폐기물이 청구인의 사업장 내로 이동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폐기물관리법」제13조, 제27조, 제39조의2
-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5. 4. 15.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신고[폐폐각 파쇄분쇄시설6-9(4,000kg/시간) 1기]를 하고, 2019. 1. 15. 폐폐각을 연간 1,000톤(평균 2,730kg/일)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19. 12. 19.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폐폐각(꼬막껍질)을 무단 투기하고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국민연대 전남본부)을 접수하여 사업장을 2회(2019. 12. 20., 12. 24.) 점검하여 사업장 내에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폐폐각과 폐대나무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배출 및 보관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폐대나무 등) 미이행과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폐각 약 3,000㎥를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였다.
- 3) 위반사항에 대하여 ①폐대나무건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후 처리기한 내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나, ②보관기간을 초과한 폐폐각(약 3,000㎥)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명령을 하였으며, 처리기간은 행정처분 전 사전 의견제출 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0. 12. 30.까지



로 하였다.

- 4)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폐각을 2020. 12. 30.까지 처리하고 분기별 처리 실적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서에 따라 이행상황을 확인하였다.
- 5) 2020. 4. 28. 청구인 부지 옆 **읍 **리 ***-** 외 1필지 소유자로부터 폐폐각이 본인 농지에 보관되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2020. 5. 6.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명령 대상 폐기물(폐폐각)이 청구인 사업장 부지로부터 인접한 **읍 **리 ***-** 외 1필지까지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6)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부지 외 농지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폐기물을 2020. 6. 15.까지 우선적으로 청구인 사업장 부지 내로 이동하도록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을 하였다.
- 7) 청구인은 2020. 6. 12.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우리 위원회는 2020. 6. 16. 인용 결정하였다.
- 9) 2020. 10. 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된 청구인 회사 부지 옆 농지인 **읍 **리 ***-** 외 1필지까지 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폐기물(폐폐각)이 상당한 높이로 부적정하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관련 폐기물을 2020. 6. 15.까지 우선적으로 청구인 사업장 부지 내로 이동하도록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청구인은 폐폐각이 보관된 **읍 **리 ***-**과 ***-** 토지는 2020. 4. 23. 민원인이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이고 해당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던 주식회사 ****니어링(가등기권자)의 요청으로 폐폐각이 매립되었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무관하고, 청구인의 처리 의무가 불분명한 이웃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 이상의 이동명령까지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2) 관계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판 단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2019. 12. 19.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2회(2019. 12. 20., 12. 24.) 점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폐대나무 등) 미이행과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패각 약 3,000㎥를 보관기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였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①폐대나무건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후 처리기한 내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나, ②보관기간을 초과한 폐패각(약 3,000㎥)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기물 처리명령(2020. 12. 30.까지)을 하였다.

2020. 4. 28. 청구인 부지 옆 농지에 폐패각이 보관되어 있다는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5. 6. 폐기물(폐패각)이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2020. 6. 15.까지 우선적으로 청구인 사업장 부지 내로 이동하도록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2020. 10. 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민원이 제기된 청구인 회사 부지 옆 농지인 **읍 **리 ***-** 외 1필지까지 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폐기물(폐패각)이 상당한 높이로 부적정하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여 관련 폐기물을 2020. 6. 15.까지 우선적으로 청구인 사업장 부지 내로 이동하도록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물 이동조치명령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처분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V

생활법률 상담사례

1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었는데,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로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로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로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명의로도용

- ☞ “휴대전화 명의로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 ☞ 누구든지 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②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명의로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로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 명의로도용방지서비스의 종류

- ☞ 명의로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제한서비스”를 가입해두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명의로



용방지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프 홈페이지(www.msafe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4

OTT 서비스를 한 달 무료체험으로 이용하다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이용 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정기결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OTT 서비스

- ☞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왓차피디아·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 ☞ OTT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권을 결제해야 이용할 수 있고, 보통 결제수단을 연동해서 매달 요금이 자동적으로 결제됩니다.

◇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의 유료 전환

- ☞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 정기구독 결제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 요금 환불 기준은 OTT 서비스 제공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OTT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책임

-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

- ☞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6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등의 리콜

- ☞ 의약품에 다음과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한 경우
 -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조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 리콜사유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리콜대상 의약품 확인

- ☞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에서는 리콜대상 의약품 및 리콜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뉴스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이 리콜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리콜이 되는지, 그리고 제 차량이 리콜대상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리콜대상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

-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및 사이트 안내

- ☞ 자동차리콜센터(<https://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리콜대상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8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거짓·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구입한 의류건조기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 ☞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소비자는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집니다.
- ☞ 소비자는 소비자예의 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시정요청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요청 등

-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래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합니다.
 - 수거·파기 등의 권고
 - 수거·파기 등의 명령
 - 과태료 처분
- ☞ 또한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할 때는 택시회사의 지휘·감독 수행 여부 등 실질적 운행·관리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택시회사인 A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9두558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 납입

청주시는 2017년 12월 A사 명의로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택시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138명이 A사 소속 기사(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데도 A사 명의의 택시를 운행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2018년 6월 “A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등 138명에게 택시를 제공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을 위반했다”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2항은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 해당 안 돼

1심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부분 A사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취소’

회사 승소 원심 파기

재판부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택시운송사업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로부터 택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 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납입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등 택시의 실질적인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운전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15명, 4대보험에 가입 신고돼 있는 사람은 53명에 불과하고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택시의 수리비, 유류비 등을 A사가 부담한 것과 택시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준수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A사가 택시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충분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 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설비 장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장착하도록 명하지 말고 원고가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B·C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2019다2174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씨 등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야기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비례의 원칙 준수돼야

1,2심은 B·C사에 대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드는 비용·시일 고려해

의무이행기 정해야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등이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62억~383억원, 노출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36억~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B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임과 요금 인상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승소 파기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으로서 B사 등이 운영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향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뒤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앞서 제시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구체적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B사 등이 A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등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3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했더라도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외국 여성이 한 달여 만에 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쉽게 혼인무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하고, 이에 더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이 같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는 더욱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를 선언했는데(2019므11584, 11591), 그에 따른 후속 판례 중 하나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여부

세심한 판단 필요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소송(2019므12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베트남 국적인 B씨는 A씨와 결혼해 2017년 11월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B씨는 입국 직후부터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생활비가 부족한 등 갈등이 생기자 한달여 만인 같은 해 12월 가출했다. A씨는 “B씨가 처음부터 나와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결혼동기에 대해 “A씨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심은 “두 사람의 혼인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은 혼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남편 승소 파기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할 때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혼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혼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베트남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해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한국 국민이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법령에 정해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어 장벽이나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감안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입국 후 단기간 내 집을 나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혼인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적인 부적응, 언어 장벽 등 결혼 당시 시대했던 생활과 현실 사이 괴리감으로 인해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혼인무효는 소급효 등으로 인해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 소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를 넓게 인정해왔다는 실무계와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는 주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 사건에 관해 그 책임 소재와 이혼 당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씨 등은 2017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 등은 “B사와 C사는 분양자로서 건물 및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기둥의 위치와 점포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해 보면 기둥이 시야, 동선, 공간활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해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어렵거나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차임 등을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해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해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해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등을 비춰보면 거래관행상 A씨 등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와 C사의 분양상담 직원이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돼 있기는 하지만, 기둥을 의미하는 별도의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시만으로 A씨 등이 각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사와 C사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5

SH “266억여원 법인세 취소하라”…4년 소송 끝에 패소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므로 상가에 266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SH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5005)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SH에 대해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실시해 △B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B시로부터 수취한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SH와 C사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의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 90억여원의 이자수익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등 6가지 사유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2013년 6월 SH에게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79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SH는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해당 부가가치세 및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에 대해선 기각 결정하면서 당초 처분세액에서 212억여원을 제외한 266억여원을 부과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SH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각각 판단했는데, 각 사항에 대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B시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정한 관련 규정들은 지방공사인 SH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사업비 지출 및 업무 수행에 대해 B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비와 용역 공급과의 대가관계 또는 사업비가 SH의 책임과 계산



으로 지출된 점을 부정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않았던 SH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SH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SH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거나, 이를 신뢰한 SH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6

경찰의 현행범 체포, 현저히 합리성 상실 않았다면 위법으로 단정해선 안돼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았다면 쉽게 위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2213).

A씨는 201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씨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맥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에도 A씨는 B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고 B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시를 요구해 받은 A씨의 신분증에는 주소지가 경남 C시로 되어 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근 지구대로 온 A씨는 30분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너희들 모가지들 날려버린다, 가까이 오면 때린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찰관에게 “○발 어린 ○끼가! 죽여버린다!”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사건 현장 CCTV를 확보했기에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해 지구대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40차례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모르는 사람을 폭행하고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반성 없이 지구대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했다”며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CCTV 등을 통해 증거는 충



분히 확보됐고 A씨가 폭행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으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보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했다고 보기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A씨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별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출동 당시 A씨는 폭행 후에도 계속해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 상황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면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신분증의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떨어져 있어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7

‘지인 집 침입해 수억원 절도’ 공모 혐의 30대, 항소심도 실형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집을 털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과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당시 차은경·김양섭·전연숙 부장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374).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대낮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6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씨의 집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C씨의 집 주소와 현금 보관 위치 등을 전달하고, B씨는 범행 당일 또다른 공범 2명에게 C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전달해 돈을 훔쳐나오게 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및 공범 2명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씨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공모·합동해 C씨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 B씨 및 공범 2명과 이 사건 범죄를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A씨는) B씨와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범 2명이 피해자 C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들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해 합동절도범행을 했



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액이 6억7000만원에 이르고, 상당 부분은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1심의 양형이 재량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8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 됐다면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정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가 따로 없었다면, 회사 측이 이러한 이유로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헬기조종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다279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B사에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했다.

비록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자동갱신 거절 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 호주에서 이뤄진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를 받았다. B사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훈련교관은 A씨에게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B사는 같은 달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규 도입 헬기에 대해 신청했던 표준감항증명 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헬기사업팀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사직의 뜻을 밝혔다. B사는 조종사 등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A씨 등은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21일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B사는 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B사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사는 이후 2018년 4월 2일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5월 1일부터 자동갱신됐으니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심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만 인용하고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2심도 “근로계약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A씨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B사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A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이와 달리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그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VI

최근 개정 시행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1.]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바, 사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며,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면 시정 또는 변경명령 없이도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함(제32조).

나.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함(제48조의2 신설).

라.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관할청이 의무적

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 63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제정·개정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공립 학교에”를 “학교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 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제48조의 제목 “(학과 등)”을 “(학과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 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 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 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변경 명령”을 “변경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② 관할청은 학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을 고발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반면,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특히 공공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진 바 있음. 또한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부는 2020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공백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사립대학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요료를 제공·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현재 15개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책임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내에 적절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이 어려우며, 때문에 별도 법인 등을 설치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위탁 운영 방식을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



련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마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보건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제4조제2항제3호 중 “보건의료자원”을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계층·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각각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가”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제6항 또는 제14조제5항”을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로”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로 한다.

제19조 중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다문화 가족 ③ - 사회적응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 제1항·제3항 및 제15조).
 -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 의료 지원
 - ▶ 건강검진
 -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



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2항).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 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 (<http://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제2항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털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 및 직업훈련

>> 문화가족 취업

-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

격이 허용됩니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Multicultural families ③ –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etc.

>> Enhancement of understanding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endeavor to take measures such as for the education, publicity, and correction of unreasonable institutions, etc. to ensure that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s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are entitled to receive education, inform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with respect to the basic common knowledge necessary for liv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ocial adaptation after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 A foreign national residing in Korea who acquires Korean citizenship is entitled to receive the following benefits for 3 year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Article 12, paragraphs 1 and 3, and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s by marriage

- ▶ Education on the institutions and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 ▶ Child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 children of immigrants by marriage
- ▶ Medical support
- ▶ Medical checkups

※ Foreign nationals in Korea raising children born by a de facto marital relationship with Korean nationals and their children are also entitled to receive the above benefits (Article 12,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Social integration program

- The program consists of Korean language courses, Korean social understanding courses, etc. to help immigrants to systematically acquire necessary information in their lives in Korea. Those who complete this program at designated agencies will benefit from the exemption of written and oral tes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Please refer to the immigration & Social Integration Network (<http://www.socinet.go.kr>) for further details.

- Support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ducts

- The national institution and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intelligence information products to the marriage immigrant with or without charges (Article 49, Paragraph 3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and Article 45, Paragraph 1,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 Civil services and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s

- Foreign nationals in Korea and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entitled to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consultation in



foreign languages by an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via telephone 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rticle 20,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provides information, inquiry consultation, and an electronic inquiry desk via the main number (☎ 1345) for telephone consultations related to foreign nationals and the web portal for comprehensive support for foreign nationals (<http://www.hikorea.go.k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 Employ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foreigner may be employed according to his/her entry purpose or visa type. Marriage immigrants with marriage immigrant (F-6) visas are legally qualified for employment.
- ※ Please contact the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at 1345 (without area code) to check whether you have a visa qualified for employment.

>> Vocational Training

- Vocational training supports job seekers or entrepreneurs to master technologies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for their goals. Foreigners are allowed to apply if they have experience acquiring employment insurance qualifications only, but marriage immigrants are exempt from this obligation.
- Employment Center (www.workplus.go.kr)
- MOEL Customer Service Center (☎ 1350 without an area code)
- HRD-NET of MOEL (www.hrd.go.kr)

多元文化家庭 ③ - 社会适应支援

对适应社会的支持

>> 增进对多元文化的理解

- 国家和地方自治团体应为进行教育、宣传，修订不合理制度或采取其他必要措施，作出应有的努力，已让韩国国民和在韩外国人理解和尊重彼此的历史、文化与制度（《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8条）。

>> 对社会适应的支持

- 在韩外国人可得到在韩生活所需的基本素质和知识相关的教育信息和咨询等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1条）。

- 取得国籍后的社会适应

- 在韩外国人取得韩国国籍后，可自取得国籍之日起3年内得到如下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2条第1项和第3项、第15条）：

- ▶ 结婚移民者韩语教育
- ▶ 韩国制度及文化相关教育
- ▶ 对结婚移民者子女的保育和教育支持
- ▶ 医疗支持
- ▶ 体检

※ 抚养在与韩国国民的事实婚姻关系中出生之子女的在韩外国人及其子女也可以得到上述支持（《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12条第2项）。

- 社会统合课程



- 由帮助移民者系统了解在韩生活所需信息的韩语课程和韩国社会理解课程等组成。在指定机构接收此课程时，可得到免除国籍取得笔试和面试等便利。详情请参考社会统合信息网 (<http://www.socinet.go.kr>)。
- 信息通信产品的支持
- 国家机关与地方自治团体可向结婚移民者等有偿或者无偿提供智能信息产品 (《智能信息化基本法》第49条第3项以及《智能信息化基本法施行令》第45条第1项第3号)。
- 面向外国人的信访指南与咨询服务
- 在韩外国人和在韩滞留的外国人可利用电话或电子通信网，通过外国人综合咨询中心得到外语信访指南和咨询服务 (《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第20条第2项及《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施行令》第16条)。
- ※ 外国人综合咨询中心通过外国人专用咨询热线 (☎1345) 和外国人综合支援门户网站 (<http://www.hikorea.go.kr>) 提供信息指南、信访咨询，以及电子信访窗口服务。

多元文化家庭就业及职业训练

>> 多元文化家庭就业

- 外国人可根据按入境目的签发的签证类型就业。取得结婚移民者 (F-6) 签证并入境的结婚移民者具备法律上允许就业的资格。
- ※ 本人能否凭借所持签证就业，可在外国人综合指南中心 (无区号1345) 确认。

>> 职业训练

- 职业训练是帮助希望就业或者创业的人熟悉职业所需技术和技能的制度。外国人须取得雇佣保险投保资格方可申请，但是结婚移民者即使没有雇佣保险

历史记录，也可以申请。

- 雇佣服务中心 (www.workplus.go.kr)
- 雇佣劳动部客服中心 (☎无区号1350)
- 雇佣劳动部职业能力开发信息网 (www.hrd.go.kr)



Gia đình đa văn hóa ③ - Hỗ trợ thích ứng xã hội

Hỗ trợ thích ứng xã hội xã hội

>> Tăng cường hiểu biết về đa văn hóa

-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phải nỗ lực chỉnh sửa và đưa ra xử lý cần thiết khác đối với chế độ còn bất hợp lí, quảng bá, giáo dục để công dân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hiểu và tôn trọng chế độ, văn hóa, lịch sử lẫn nhau (Điều 18,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Hỗ trợ thích ứng xã hội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ược hỗ trợ về tư vấn và cung cấp thông tin, giáo dục các kiến thức và kiến thức cơ bản cần thiết trong sinh hoạt ở Hàn Quốc (Điều 11,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Thích ứng xã hội sau khi nhập tịch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ã nhập tịch được nhận các đãi ngộ sau từ ngày nhập tịch cho đến ngày quá 3 năm (Khoản 1, Khoản 3 Điều 12 và Điều 15, Luật cơ bản về đã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 Giáo dục tiếng Hàn cho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 ▶ Giáo dục văn hóa, chế độ Hàn Quốc
- ▶ Hỗ trợ giáo dục
- ▶ Hỗ trợ y tế
- ▶ Kiểm tra sức khỏe

※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ang nuôi con được sinh ra từ mối quan hệ kết hôn thực tế với công dân Hàn Quốc, và con của họ được nhận các ưu đãi trên (Khoản 2 Điều 12, Luật cơ bản đố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 Để người nhập cư có thể tiếp thu một cách hệ thống các thông tin cần thiết cho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chương trình được chia thành 2 phần “Học tiếng Hàn” và “Tìm hiểu văn hóa Hàn Quốc”. Người hoàn thành chương trình này tại cơ quan giáo dục chỉ định được miễn thi phỏng vấn và thi viết khi lấy quốc tịch. Nội dung chi tiết vui lòng tham khảo tại mạng lưới thông tin hội nhập xã hội (<http://www.socinet.go.kr>).

- Hỗ trợ sản phẩm thông tin viễn thông

· Cơ quan nhà nước và tổ chức tự trị địa phương có thể cung cấp các sản phẩm trí tuệ thông minh miễn phí hoặc có phí cho những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Khoản 3 Điều 49, Luật cơ bản về thông tin hóa trí tuệ và Điểm 3 Khoản 1 Điều 45, Điều 45 Khoản 1 Điểm 3, Thông tư thi hành Luật cơ bản về thông tin hóa trí tuệ).

- Hướng dẫn và tư vấn dân sự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sử dụng điện thoại hay mạng lưới thông tin điện tử đều có thể được tư vấn, hướng dẫn dân sự bằng tiếng nước ngoài từ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Khoản 2 Điều 20, Luật cơ bản về đố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và Điều 16, Thông tư thi hành Luật cơ bản về đối ngộ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 Trung tâm hướng dẫn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vận hành Quầy dân sự điện tử, tư vấn điện tử và hướng dẫn thông tin tại Cổng thông tin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hợp (<http://www.hikorea.go.kr>) cùng số



전화 (☎1345) để tư vấn bằng điện thoại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ông tin việc làm và đào tạo nghề cho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 Thông tin việc làm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tuyển dụng tùy theo mục đích nhập cảnh và loại thị thực được cấp. Người kết hôn nhập cư được cấp visa kết hôn nhập cư (F-6) và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ược phép làm việc hợp pháp.
- ※ Có thể kiểm tra xem có thể có công việc nào phù hợp với thị thực của bản thân thông qua Trung tâm Thông tin tổng hợp về Người nước ngoài (1345 không có mã vùng).

>> Đào tạo nghề

- Đào tạo nghề là chế độ giúp những người mong muốn tìm việc làm hoặc bắt đầu kinh doanh có được kỹ năng và kỹ thuật cần thiết cho công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có lịch sử đã tham gia bảo hiểm việc làm thì mới có thể đăng ký được, tuy nhiên những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ngay cả khi không có lịch sử tham gia bảo hiểm việc làm.
- Trung tâm việc làm (www.workplus.go.kr)
- Trung tâm Tư vấn Khách hàng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 1350 không có mã vùng)
- Mạng lưới thông tin phát triển năng lực nghề của Bộ Việc làm và Lao động (www.hrd.go.kr)

VIII

법제처 법나들이

옥상은 누구의 것?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텃밭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각 동의 옥상이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임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자체 공모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텃밭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나홀로 씨가 단독으로 텃밭을 경작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협의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씨는 아파트 전체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얼른 213동 옥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213동 옥상이 왜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입니까? 213동 주민들은 언제든지 쉽게 213동 옥상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건물의 구조상 다른 동에서는 213동의 옥상 이용이 제한되고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213동 옥상은 213동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인데, 211동에 살고 있는 정의감 씨가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파트 옥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 ① 공용부분이다 ② 일부 공용부분이다



지난 호 정답

대출 받으려 건넨 체크카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체크카드를 대출 상대방에게 준 것이 대출 대가라거나,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2. 해당하지 않는다